

# 제 22 회 구미시의회 ( 임시회 ) 집회결과

|                                   |                             |         |      |         |      |     |
|-----------------------------------|-----------------------------|---------|------|---------|------|-----|
| 건 명                               |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         |      |         |      |     |
| 집 회 기 간                           | 1993. 2. 19 - 2. 20         |         |      |         |      |     |
| 의 결 일 시                           | 1993. 2. 20                 | 재 적 의 원 | 22 명 | 출 석 의 원 | 22 명 |     |
| 의 결 사 항                           |                             |         |      |         |      |     |
|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                             |         |      |         |      |     |
| 첨 부 :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                             |         |      |         |      |     |
| 1993 년 2 월 20 일                   |                             |         |      |         |      |     |
|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                             |         |      |         |      |     |
| 의 결 방 법                           |                             | 이 상 유 무 |      |         |      |     |
| 의 결 시 찬 반 표 시                     |                             | 찬 성     | 22 명 | 반 대     | 명    | 기 권 |

##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 소장 ) 제 1 항중 " 지방시설기정 " 을 " 지방시설서기관 " 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조례는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 다른 조례의 개정 ) ①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 " 를 "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으로 한다.

②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 지방토목기좌 " 를 " 지방토목사무관 " 으로 한다.

③ 구미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 지방보건기좌 " 를 " 지방보건사무관 " 으로 한다.

④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 " 를 "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 으로 한다.

제 22 회 구미시의회 ( 임시회 ) 집회결과

|                                                                                                                                                                                                                               |                              |         |      |         |      |
|-------------------------------------------------------------------------------------------------------------------------------------------------------------------------------------------------------------------------------|------------------------------|---------|------|---------|------|
| 건 명                                                                                                                                                                                                                           |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         |      |         |      |
| 집 회 기 간                                                                                                                                                                                                                       | 1993. 2. 19 - 2. 20          |         |      |         |      |
| 의 결 일 시                                                                                                                                                                                                                       | 1993. 2. 20                  | 재 적 의 원 | 22 명 | 출 석 의 원 | 22 명 |
| <p>의 결 사 항</p> <p>○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p> <p>첨 부 :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1 9 9 3    년    2    월    2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p> |                              |         |      |         |      |
| 의 결 방 법                                                                                                                                                                                                                       | 이 상 유 무                      |         |      |         |      |
| 의 결 시 찬 반 표 시                                                                                                                                                                                                                 | 찬 성                          | 22 명    | 반 대  | 명       | 기 권  |

##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축장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수수료)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살해체 수수료 요율표

| 작 업 장 별 | 수 축 의 종 류 | 기 준 | 수 수 료    |
|---------|-----------|-----|----------|
| 간이 도축장  | 소, 말      | 두 당 | 23,000 원 |
|         | 돼지, 양     | "   | 4,950 원  |

## 제 22 회 구미시의회 ( 임시회 ) 집회결과

|                                                                                                                                                                                                |                                  |         |      |         |      |
|------------------------------------------------------------------------------------------------------------------------------------------------------------------------------------------------|----------------------------------|---------|------|---------|------|
| 건 명                                                                                                                                                                                            |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결의 건 |         |      |         |      |
| 집 회 기 간                                                                                                                                                                                        | 1993. 2. 19 - 2. 20              |         |      |         |      |
| 의 결 일 시                                                                                                                                                                                        | 1993. 2. 20                      | 재 적 의 원 | 22 명 | 출 석 의 원 | 22 명 |
| <p>의 결 사 항</p> <p>○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p> <p>첨 부 :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1993 년 2 월 2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p> |                                  |         |      |         |      |
| 의 결 방 법                                                                                                                                                                                        | 이 상 유 무                          |         |      |         |      |
| 의 결 시 찬 반 표 시                                                                                                                                                                                  | 찬 성                              | 22 명    | 반 대  | 명       | 기 권  |

##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 1 조 ( 목 적 )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도시계획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사업의 목적 및 명칭 ) 이 사업은 일단의 대지조성과 구미시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아울러 구역안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명칭은 구미시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제 3 조 ( 사업지구 및 면적 )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구미시 봉곡, 부곡동 일부 토지 1,281,055평방미터 ( 제 1지구 714.303 평방미터, 제 2지구 566,752 평방미터 )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등에 관하여는 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 ( 이하 "시행자" 라 한다 ) 가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 ( 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 ) 에 의한다.

제 4 조 ( 사업의 범위 )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면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사업, 기타사업으로 한다.

제 5 조 (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의 사무소는 구미시청 안에 둔다.

제 7 조 ( 비용부담 )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부과 금액은 시행 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 8 조 ( 사업비 )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등의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한다.

제 9 조 ( 특별회계설치 )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는 구미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10 조 ( 공고 ) 공고는 관보 및 구미시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11 조 ( 종전토지 ) ①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 합병된 분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면적

제 12 조 ( 토지등의 평가 ) ① 정리전,후의 토지 각 필지에대한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 공인감정기관의 평가 가격등을 참고하여 구미시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한다.

제 13 조 ( 환지계획 ) ① 본 사업 각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 48조 내지 제 51조 및 제 53조의 규정에따라 환지로서 교부할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부담을 적용하며, 제 3항 내지 제 7항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토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행자가 인정한 건물에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때에는 종전의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공하는 토지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공고일현재 토지수용법 제 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기존건물로서 전면 도로가 사유 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폭원의 1/2을 연도부담으로 부담 시킬수 있다.
-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때에는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 ⑧ 기존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 ⑨ 기존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한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 ⑩ 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 면적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제 14 조 ( 연도부담 ) ① 정리후 도로가될 토지의 부담은 당해도로 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받기로 결정된 토지에 주어질 환지면적중에서 직접부담(이하 "연도부담"이라 한다)하며 부담면적 산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1에 표시한 부담폭원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2. 1필의 토지로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별표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별표2에 표시한 부담 폭원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3. 제2호의 각지 토지로서 표준안길이를 갖지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접면장에 별표2의 부담폭원을 곱한수에 별표4의 부담 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4.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 도로의 표준 안길이 이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1의 부담폭원의 4분의1, 주거지역에서는 6분의1만 부담하되 표준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 기능만 가질때는 배면도로로 한다.
5. 각지 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때는 제2호의 부담폭원에 별표5에 의하여 갱정한 물을 곱한것을 부담폭원으로 한다.
6. 곡선 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물 앞길일로 간주 한다.
7. 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길이의 전면도로 표준 안길이의 2분의1이 되는 지점에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 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면의 길이가 전면도로 표준안길이를 초과하거나 표준안길이 이내에 있을 때는 전면도로 표준안길이의 2분의1인 거리만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8. 획지의 표준 앞길이 및 표준 안길이는 별표3에 의한다.
9.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가. 각 도로의 폭원이 다를때는 폭원이 큰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
  - 나. 도로폭원이 동일한때는 장변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10.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된 도로에 접한 토지는 연도부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 특별환지 ) ① 종전토지의 면적이 구미시 건축조례상 용도지역별 1 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상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환지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 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증(과도)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 되도록 할 수 있다.

③ 환지로 지정할 위치에 지장물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족 환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 1 항의 용도지역별 1 택지 기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거지역 : 180㎡

나. 상업지역 : 330㎡

제 16 조 ( 환지예정지 사용 ) ①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 및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그 사용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 청 산 )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청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법정 이자를 징수 한다.

제 18 조 ( 토지의 관리 )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완료 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 체비지 관리 및 처분 ) ①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 청산금 및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을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사용  
할 수 없다.

제 20 조 ( 부담면적 )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 시행전 · 후  
토지면적의 평가가액 및 설계 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한다.

제 21 조 ( 환지예정지의 측량등 )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으로 부터 법  
제 56조의 규정에의한 통지가 있은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측량도 교부등  
신청이 있을때는 구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② 제 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지적기사 자격증 소지자중 구미시가 지정한 측지  
기사, 지적기사로 하여금 측량하여야 한다.

제 22 조 ( 환지 처분 ) ① 환지 처분은 공사가 완료된후 즉시 공사완료 공고 하고  
공람 시킨후 한다  
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환지계획에 의한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증 명 ) 시장은 사업 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 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 24 조 ( 동기완료후의 통지 ) 시장은 법 제 65조에 의한 축락등기가 완료된 때에  
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5 조 ( 대리인 신고 ) 당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미시 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 26 조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명의 변경 신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  
으로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 이동신고 ) ①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를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면도로부지 연도부담 폭원표

(단위 : m)

| 전면도로<br>폭 원 | 35   | 30   | 25  | 20  | 15  | 12  | 10  | 8   | 6   | 4   | 3   |
|-------------|------|------|-----|-----|-----|-----|-----|-----|-----|-----|-----|
| 부담 폭 원      | 11.3 | 10.0 | 8.7 | 7.4 | 6.0 | 5.0 | 4.5 | 4.0 | 3.0 | 2.0 | 1.5 |

(별표 2)

측면도로부지 연도부담 폭원표

(단위 : m)

| 전면도로<br>폭 원  | 35    | 30    | 25    | 20    | 15    | 12    | 10    | 8     | 6     | 4     | 3     |
|--------------|-------|-------|-------|-------|-------|-------|-------|-------|-------|-------|-------|
| 측면각지<br>상업지역 | 3.767 | 3.333 | 2.900 | 2.467 | 2.000 | 1.667 | 1.472 | 1.333 | 1.000 | 0.667 | 0.5   |
| 주거지역         | 2.800 | 2.510 | 2.200 | 1.910 | 1.500 | 1.300 | 1.120 | 1.000 | 0.800 | 0.534 | 0.400 |

(별표 3)

표준안길이 및 각지의 표준앞길이표

(단위 : m)

| 도로 폭 원       | 35 | 30 | 25 | 20 | 15 | 12 | 10 | 8  | 6  | 4  | 3  |
|--------------|----|----|----|----|----|----|----|----|----|----|----|
| 표준안길이        | 28 | 26 | 24 | 22 | 21 | 20 | 19 | 18 | 16 | 13 | 12 |
| 각지표준<br>앞 길이 | 28 | 26 | 24 | 22 | 21 | 20 | 19 | 18 | 16 | 13 | 12 |

(별표 4)

측면도로부담채감율표

(단위 : m, %)

| 전면도로폭원<br>앞 길이 | 4     | 6     | 8     | 10    | 12    | 15    | 20    | 25    | 30    | 35    |
|----------------|-------|-------|-------|-------|-------|-------|-------|-------|-------|-------|
| 9.0            | 91.1  | 82.1  | 76.7  | 76.7  | 69.4  | 69.4  | 67.3  | 63.3  | 59.8  | 56.7  |
| 10.9           | 97.3  | 90.2  | 85.3  | 85.3  | 78.2  | 78.2  | 76.1  | 72.0  | 68.3  | 64.9  |
| 12.7           | 99.7  | 95.3  | 91.5  | 91.5  | 85.4  | 85.4  | 83.4  | 79.4  | 75.5  | 72.3  |
| 13.0           | 100.0 |       |       |       |       |       |       |       |       |       |
| 14.5           |       | 99.0  | 96.5  | 96.5  | 91.2  | 91.2  | 88.4  | 85.6  | 82.0  | 78.7  |
| 16.0           |       | 100.0 |       |       |       |       |       |       |       |       |
| 17.0           |       |       | 99.2  | 99.2  | 95.4  | 95.4  | 93.9  | 90.7  | 87.4  | 84.2  |
| 18.0           |       |       | 100.0 |       |       |       |       |       |       |       |
| 18.2           |       |       |       | 99.4  | 98.2  | 98.2  | 97.7  | 94.6  | 91.7  | 88.8  |
| 19.0           |       |       |       | 100.0 | 99.7  |       |       |       |       |       |
| 20.0           |       |       |       |       | 100.0 | 99.7  | 99.2  | 97.4  | 95.1  | 92.6  |
| 21.0           |       |       |       |       |       | 100.0 |       |       |       |       |
| 21.8           |       |       |       |       |       |       | 99.7  | 99.2  | 97.6  | 95.6  |
| 22.0           |       |       |       |       |       |       | 100.0 |       |       |       |
| 23.6           |       |       |       |       |       |       |       | 99.7  | 99.2  | 97.8  |
| 24.0           |       |       |       |       |       |       |       | 100.0 |       |       |
| 25.5           |       |       |       |       |       |       |       |       | 99.7  | 99.2  |
| 26.0           |       |       |       |       |       |       |       |       | 100.0 |       |
| 27.3           |       |       |       |       |       |       |       |       |       | 99.8  |
| 28.0           |       |       |       |       |       |       |       |       |       | 100.0 |

(별표 5)

예, 둔각지 측면도로 부담 개정율표

|        |     |       |       |       |       |       |       |       |       |       |
|--------|-----|-------|-------|-------|-------|-------|-------|-------|-------|-------|
| 예<br>각 | 각 도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45    |
|        | 율   | 0.944 | 0.889 | 0.833 | 0.778 | 0.722 | 0.677 | 0.621 | 0.551 | 0.500 |
| 둔<br>각 | 각 도 |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30   | 135   |
|        | 율   | 0.973 | 0.944 | 0.916 | 0.889 | 0.861 | 0.833 | 0.805 | 0.778 | 0.750 |

( 별지 제 1 호 서식 )

# 환지여정지 사용신청서

구미 도시계획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다음의 토지를 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55 100 100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illegible]

※ 첨부 : 1) 인감 증명서 1 통  
2) 등기부 등본 1 통

구미시장귀하

( 별지 제 2 호 서식 )

## 환지예정지 사용 승락서

- [illegible]

2. 사용면적 : m<sup>2</sup>

3. 사용자 주소 :  
 설명 :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락함.

( 조건사항 )

1. 환지예정지 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물건을 지체없이 철거 하여야 함.
2.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사항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사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할 것임.  
만약 표시사항 멸시로 인하여 재명시 신청이 있을때는 수수료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4. 공작물 또는 건축물 착수 및 준공의 제출은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 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99 51 20 10

구 미 시 장

첨 부 : 환지에정지 지정도면 1 부

( 별지 제 3 호 서식 )

## 토지 소유권 이전 신고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매매면적 | 환 지 예 정 지 |     |     | 비 고 |
|---|----|----|----|------|-----------|-----|-----|-----|
|   |    |    |    |      | 브 록       | 롯 트 | 면 적 |     |
|   |    |    |    |      |           |     |     |     |

상기 재산은 199    년       월       일 매매하였으므로 구미시 도시계획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21조에 의거 신고 합니다.

199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등기부 등본 1 부

구 미 시 장 귀하

( 별지 제 4 호 서식 )

## 주소 (성명) 변경 신고

환지예정지 위치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m^2$

| 변경 전 |    | 변경 후 |    | 비고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    |      |    |    |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 되었기에 구미 도시계획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21조에 의하여 주소(성명) 변경을 신고 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 등본 1 통 (주소, 거소 변경시)

### 하적등본 1 통 (성명 변경시)

199 51 100 100

신 고 인                      인

구미시장귀하

( 별지 제 5 호 서식 )

## 대리인 선정 신고

구미 도시계획 봉곡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20조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구   미   시   장   귀   하